

조선시대 七祀에 관한 小考

권 용 단*

- I. 서론
- II. 七祀의 의미: 우주론적 순환
- III. 五祀와 七祀
- IV. 七祀의 형식과 제후국의 명분
- V. 결론

I. 서론

이 글은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칠사(七祀)의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칠사의 형식이 제후국의 명분과 불일치하게 된 원인과 더불어 칠사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칠사는 국가에서 일곱 귀신인 사명(司命)·호(戶)·조(竈)·중류(中霤)·공려(公厲)·국문(國門)·국행(國行)에게 드렸던 제사 이름이다. 칠사 신들에 대한 제사는 국가의례 중 길례(吉禮) 대사(大祀)였던 종묘제향에서 왕의 조상들이 먼저 제향된 후¹⁾ 행해졌기 때문에, 종묘제향을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의례라고도 볼 수 있다. 칠사 신들의 신주는 종묘의 뜰 서쪽에 있는 칠사당(七祀堂; 廟3칸)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다. 칠사 신들에 대한 제사는 지금까지 종묘제향은 왕의 조상들을 제향하는 국가의 큰 제사였다는 것으로만 인식되어왔을 뿐, 의례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주목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칠사 신들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종묘제향은 사직(社稷)과 함께 유교적 이념을 담고 행해진 국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1) 칠사는 종묘제향(就位-晨禋禮-初獻禮-亞獻禮-終獻禮-飲福禮-望燎)시 종묘에 대한 3獻을 마친 후, 七祀獻官의 주재 아래 행해졌다. 『國朝五禮儀』 권1, 吉禮, 四時及臘享宗廟儀; 『國朝五禮序列』 권1, 吉禮, 壇廟圖說.

가의례 가운데서도 비중이 컸던 의례였기 때문에, 종묘제향의 한 부분을 구성 하였던 칠사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칠사 중에서 ‘중류’는 종묘제향과는 별도로 독립된 의례로 행해졌으며, 칠사 전체가 길례 소사(小祀)로 따로 상정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종묘의 의미와 기원, 역사적 변천과 그 정치적인 배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은 있었지만²⁾, 종묘에 관한 논의에서 칠사는 늘 제외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종묘제향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확인되지만³⁾, 이 시기에 칠사와 관련된 어떠한 의례의 명칭도 찾아볼 수 없다. 문헌상으로 칠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발견되는데⁴⁾, 조선과 마찬가지로 종묘제향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의례의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조선의 칠사제향은 고려시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려와는 달리, 유교적 이념으로 건국된 조선은 제후국의 격에 맞는 의례만을 거행할 수 있었고, 의례 대상과 절차도 유교식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초기부터 기존의 국가의례 하나하나에 대한 몇 차례의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려시대에 행해지던 국가의례들이 유교적 이념을 기준으로 가감되기도 하였다.⁵⁾

유교적 이념에 비추어 보면, 칠사는 확연하게 조선의 국가의례 상정 기준에서 어긋난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칠사의 경전적 근거가 되는 『禮記』(祭法)에 따르면, 왕[天子]은 칠사를, 제후는 오사(五祀)를 행한다는 내용이 명시

2) 종묘에 대한 논문들 대부분은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宗廟世室의 역사적 변천에 집중하고 있다. 김해영, 『조선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2003.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성리학 정통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지두환, 『세계 문화 유산 종묘이야기』, 집문당, 2005. 이현진, 「조선 후기 종묘정비와 世室論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3) 문헌상으로 남아있는 종묘의 기원을 보면, 신라는 남해왕 3년(A.D. 3) 봄에 혁거세의 묘를 세워 四時로 제사지냈다. 고구려는 神廟를 세워 사람과 관청을 세워 10월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백녀와 주몽에게 제사 지냈다. 백제는 시조 구태(仇台)의 묘를 나라의 도성에 세우고 일년에 네 번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三國史記』 권32, 雜誌1, 祭祀.

4) 『고려사』 권60, 志14, 太廟; 『고려사』 권61, 志15, 太廟.

5) 기존의 국가의례들과 새롭게 채택된 국가의례들의 상정 근거가 되었던 커다란 기준은, 고려시대의 국가사전으로 알려졌지만 남아있지 않은 『詳定古今禮』, 명나라의 『洪武禮制』, 그리고 중국의 舊禮이자 舊習이라 할 수 있는 古制였다.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제후국으로서 당연히 오사—사명(司命), 국문(國門), 공려(公厲), 국행(國行), 중류(中霽)—를 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조선은 『예기』(제법)을 칠사의 경전적 근거로 삼았으면서도, 천자(天子)만이 드릴 수 있는 칠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더욱 의아한 점은, 조선 초기 국가의례 선정에 관한 엄격한 논의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칠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양반이후 유교적 이념이 더욱 확고해지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까지 시정은 물론 재고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世宗實錄五禮儀』를 출발로 『國朝五禮儀』(1474), 『國朝續五禮儀』(1744), 『春官通考』(1788), 『大韓禮典』(1897)이라는 네 번의 예제(禮制) 개편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칠사자체에 대한 뚜렷한 변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두 가지로 정리하여 조선시대 칠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은 칠사제향을 『예기』(제법)에 근거하여 실천하였으면서도 천자는 칠사에 제향하고, 제후는 오사에 제향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그렇다면 칠사는 종묘제향이라는 규모가 큰 의례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비교적 작은 주변의례로 여겨졌기 때문에, 종묘의례에 묻혀서 소홀하게 여겨지면서 그저 형식적인 의례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위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칠사 신들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이었던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조선시대에 칠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을 그 경전적 근거와 함께 중국의 선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칠사가 실제로 아무 의미 없는 그저 형식적으로 반복되었던 의례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칠사만이 취하고 있었던 독특한 형태를 단서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 국가의례 이념과 실천, 명분과 실제 사이의 괴리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론적 연구가 될 것이다.

II. 七祀의 의미: 우주론적 순환

『예기』(제법)에 의하면, 칠사는 천자가 드리는 제사 이름으로, 사명(司命)·호(戶)·조(竈)·중류(中霽)·태려(泰厲)·국문(國門)·국행(國行)을 말한다. 오

사는 제후가 드렸던 제사 이름으로 사명(司命)·중류(中霽)·공려(公厲)·국문(國門)·국행(國行)을 말한다. 『예기』(제법)에 근거하여 보면, 조선은 제후국으로서 오사를 준수해야 했지만 칠사를 고수하였다. 그런데 그 종류는 <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사명(司命)·호(戶)·조(籠)·중류(中霽)·공려(公厲)·국문(國門)·국행(國行)이다. 여기서 눈여겨볼만한 점은, <표1-2>와 같이 조선은 칠사를 고수하였지만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태려’가 아닌 ‘공려’에 제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제IV장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조선만의 독특한 칠사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칠사의 종류는 『예기』(제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각 제사가 실행되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禮記』(月令)에서 제시되는 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왔다. <표1-2>에서 볼 수 있듯이, 월령에서는 제법에 근거한 칠사 중에서 ‘사명’과 ‘태려’가 빠져 있는 오사—호·조·중류·문·행—가 제향되는 시기만을 언급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표1-3>과 같이 월령에서 제시하는 오사의 종류는 제법의 오사와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행해진 칠사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제법의 칠사 제향의 시기와 역할을, 봄에는 사명과 호, 여름에는 조, 계하 토왕일에는 중류, 가을에는 태려와 국문, 겨울에는 국행을 각각 설정하여 그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⁶⁾ 다만 ‘사명’과 ‘태려’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선례에서 각각 봄과 가을에 제향되었던 것을 근거로 삼았다.

<표1-1> 『예기』 제법의 七祀와 五祀

七祀	司命·戶·籠·中霽·泰厲·國門·國行
五祀	司命·中霽·公厲·國門·國行

<표1-2> 조선시대 칠사

조선	司命·戶·籠·中霽·公厲·國門·國行
----	--------------------

6) 칠사 신들 각각의 역할과 제향 되는 시기에 관해서는, 『禮記』, 月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도 이 부분을 주로 참고 하였다.

<표1-3> 『예기』 월령의 五祀와 時日

春	夏	季夏 土旺日	秋	冬
戶	竈	中霤	門	行

봄에는 사명신과 호신이 제향되었다. 먼저, 사명은 인간의 삼명(三命)을 감찰하는 신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별이름을 가리키기도 한다.⁷⁾ 여기서 말하는 삼명(三命)이란 수명(受命), 조명(遭命), 수명(隨命)으로 대체로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⁸⁾ 그렇다고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하늘[天]의 역할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명신과 함께 봄 제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출입을 관장하는 호신이며, ‘사호(司戶)’라고도 명명한다. 호는 안쪽을 향해 있으며, 봄의 양기(陽氣)를 품고 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양기가 발산되는 봄에 제사 드려졌다.⁹⁾

여름에는 조신이 제향 되었다. 조신은 주로 음식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엌의 신으로, ‘사조(司竈)’라고도 한다. 여름은 양기가 왕성하여 뜨거운 열기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이와 비슷한 뜨거운 열기와 상응하는 부엌에 있는 조신에게 제사 드렸다.¹⁰⁾

계하 토왕일에는 중류신이 제향되었다. 중류신은 궁중의 당(堂)이나 실(室)에 거처를 주관하는 작은 토신[小土神]으로 ‘중(中)’이라고도 한다. 상고대에는 지형을 따라 굴을 만들어 살았는데, 지대가 높으면 땅을 뚫어서 구멍[穴]을 만들었고, 이곳을 통해 빗물이 흘러내리곤 하였다. 이후 구멍을 통해 물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뜻으로 ‘중류’라고 명명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류는 집의 중앙 또는 방의 중앙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집의 중심이자 근간이 되는 곳을 의미이다. 한편, 토왕일은 각 계절 말미의 18일씩을 말하며, 계하 토왕일은 음력 6월로 1년의 가운데에 해당된다. 토(土)는 중앙을 주관하며, 오행의 주(主)

7) 문창궁(文昌宮)의 제 사성(四星)으로 화톳불을 놓아 하늘에 제사지내는[燹燎] 대상 중 하나를 가리킨다. 『周禮』, 大宗伯, “以燹燎 祀司中司命.”

8) 구체적으로 수명은 좋은 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장수(長壽)를 말한다. 조명은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선함을 행하였지만 좋지 않은 일을 우연히 만나는 것을 말한다. 수명은 살피면서 행하는 것으로 선악에 따라 응당 심판 받는 것을 말한다. 『禮記正義』, 祭法, “命有三科 有受命以保慶 有遭命以譴暴 有隨命以督行 受命謂年壽也 遭命謂行善而遇凶也 隨命謂隨其善惡而報之.”

9) 『禮記正義』, 月令, “春陽氣出 祀之於戶者 戶在內 從外向內 戶又在內 故云 內陽也…此戶神則陽氣在戶內之神 故云 祀之於戶 內陽也 由位在戶內.”

10) 『禮記正義』, 月令, “夏陽氣盛 熱於外 祀之於竈 從熱類也.”

가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토신(土神)은 집 가운데에 있다고 보았다.

가을에는 국문신과 태려가 제향되었다. 국문신은 나라의 문인 성문(城門)의 출입을 관장하는 신으로 ‘문(門)’이라고도 한다. 문은 밖을 향해 있으며, 가을의 음기(陰氣)를 발산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을에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¹¹⁾ 태려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無祀鬼神]으로 사형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으며, 흔히 ‘여(厲)’¹²⁾ 라고 명명한다. ‘여’라고 하면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사귀신(無祀鬼神)’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태려는 죽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왕[天子]을 의미한다. 제사를 받지 못하는 여의 원한이 사람들에게 해(害)를 가한다고 여겨져,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에게 제사 드려지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제향된 ‘여’의 명칭은 ‘공려’인데, 공려란 제후를 가리키는 ‘공’과 자손이 없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이라는 의미의 ‘여’가 합쳐진 말로 죽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제후를 가리킨다.¹³⁾ 제법에 의하면, 천자가 행하는 칠사의 ‘려’는 ‘태려’라고 하며, 제후가 행하는 오사의 ‘려’는 ‘공려’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조선은 칠사를 행하면서 ‘태려’가 아닌 ‘공려’에

11) 『禮記正義』, 月令, “秋其祀門 主云秋陰氣出 祀之於門者 門在外 從內向外 門又在外 故云外陰也 則門神陰氣之神.”

12) ‘여’의 의미는 『春秋左傳』(昭公 7年)의 죽은 伯有에 관한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襄公30년 鄭나라 사람이 백유를 죽인 일이 있었다. 이후 죽은 백유가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죽을 것이라 예언하고, 그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자, 鄭나라 사람 子產이 良止를 백유의 후사로 삼아 백유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때 자산은 “귀신은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귀가 되지 않는다.(“鬼有所歸 乃不爲厲”) 내가 그를 위하여 돌아갈 곳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즉 여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을 말한다.

13) 『禮記正義』, 祭法, “諸侯稱公 其鬼爲厲 故曰公厲.”

제후로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공려(公厲)’와 여제(厲祭)에서 모셔지는 무사귀신인 여귀(厲鬼)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여제는 1401년(태종1)에 수창궁壽昌宮 화재의 원인을厲의 원기(怨氣)가 쌓여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생긴 변괴(變怪)로 보고, 1404년(태종4)부터 시행된 의례였다.(『太宗實錄』 권1, 太宗 元年 1月 甲戌, “此足以積怨氣而生疾疫 傷和氣而致變怪者也”) 이후 여제는 성종대에 길례吉禮 소사小祀로 책정되었으며, 매년 봄 청명일(淸明日)과 가을 7월 15일, 10월 초 1일에 제향되었다.(『太宗實錄』 권6, 太宗 4年 6月 戊寅) 공려와는 달리, 여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15가지 귀신들을 가리킨다. 남의 칼에 맞아 죽은 자, 물이나 불로 상해를 당한 자나 도적을 만나서 죽은 자, 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꺾박당해서 죽은 자, 남에게 강제로 처첩(妻妾)을 빼앗기고 죽은 자, 형벌과 화(禍)를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자, 하늘의 재앙이나 전염병을 만나서 죽은 자, 맹수(猛獸)나 독이 있는 곤충에게 해를 입어서 죽은 자, 얼거나 굶어 죽은 자, 전쟁에서 죽은 자, 위급한 일을 당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담이나 집에 깔려서 죽은 자, 난산(難産)으로 죽은 자, 벼락 맞아 죽은 자,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자, 죽은 뒤에 자손이 없는 자이다.(『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 祝祀)

제사 드림으로써 천자의 예(禮)인 칠사를 따르면서 신위(神位)의 명칭은 제후의 예를 따르고 있었다.¹⁴⁾ 한편, 태려가 가을 제사의 대상이 되는 경전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아마도 가을이 살기(殺氣)가 가득한 계절이기 때문에 사형을 관장하는 려에 제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겨울에는 국행신이 배향되었다. 국행신은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왕래(往來)와 사건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행(行)’이라고도 명명한다. 행신은 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며, 국문 밖 서쪽에 있다. 고대에는 사자(使者)가 외출을 하기 전에 사당문 바깥 서쪽에 행신을 향해 예물을 진열해 놓고, 장차 사신의 임무를 띠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하였다.¹⁵⁾ 문 바깥에 행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나서야 하기 때문에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기원하는 의미였다. ‘국행’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국행신이 겨울 제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겨울은 음이 왕성한 시기이며 길은 물보다 차갑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¹⁶⁾

정리하면, 사명신은 인간의 삼명(三命)을, 문신과 호신은 성문의 출입을, 국행신은 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왕래를, 태려는 옛날 후사가 없이 죽은 왕으로서 사형을, 조신은 음식의 일을, 중류신은 당실(堂室)의 거처를 주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¹⁷⁾ 칠사 신들은 인간과 함께 거하면서 작은 과실을 살피고 문책하는 소신(小神)¹⁸⁾ 들로서, 기본적으로 궁중의 안위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들이다. 마치 민간에서 집안의 무사안일을 지켜준다고 여겨졌던 집안의 여러 신들의 역할과 비슷하다. 예컨대 부뚜막 신인 조왕신은 집안의 질병과 액운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문에는 가택 수호신인 문신(門神)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여겨졌다. 정월 초하루의 안택굿이나 가을 상

14) 이 문제는 제IV장에서 다루고 있다.

15) 『儀禮』, 聘禮, “釋幣于行.”

16) 『禮記正義』, 月令, “冬陰盛 寒於水 祀之於行.”

17) 『文獻通考』 권86, 郊社考19, 五祀. “司命主督察三命 中霤主堂室居處 門戶主出入行主道路行作 厲主殺罰 竈主飲食之事.”

18) 『禮記正義』, 祭法, “小神居人之間 司察小過 作譴告者爾.”

칠사 신들의 기원에 관해 鄭玄은 처음으로 행위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馬融은 칠사 중 오사인 문, 호, 조, 행, 중류가 오행에 따라 각각의 때에 맞추어 제사 드리는 五官의 신 配食者라고 말한다. 許慎은 옛날 공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鄭玄云…七祀應古之始造者焉 馬融以七祀中之五門戶竈行 中霤卽句芒等五官之神配食者…月令五時祭祀只是金木水火土五行之祭也 許慎云…古之有功德於人.”) 『文獻通考』 권86, 郊社考19, 五祀.

달 고사 때 집안의 신에게 고사 드리는 행위도 칠사 신들의 역할과 대응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칠사 신들은 기본적으로 제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칠사 신들의 기능은 각 계절 따른 원인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칠사 신들은 사시(四時)와 계하 토왕일에 각각 배정되어 모셔졌던 것은, 일년을 다섯 단위로 나누어 성스러운 날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연적 시간의 흐름 그 하나하나의 덩어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계절에 어떠한 재해도 문제도 없이 그 계절에 맞게 자연이 운행되기를 기원하였던 것이다. 자연의 운행은 곧 인간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기 위해서는 계절의 순조로운 진행이 어긋나서는 안된다. 이렇듯 자연의 순조로운 순환의 질서에 인간의 일들을 맞추어 진행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데에서 바로 우주론적 순환의 구조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칠사 신들은 오행(五行)의 세계관을 근간으로 사시와 계하 토왕일에 정기적으로 제향됨으로써 각 계절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는 우주론적 순환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¹⁹⁾

칠사의 이러한 우주론적 순환의 역할은 종묘와의 관계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 종묘제향에서 칠사 또는 오사가 함께 배향되기 시작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고대부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증자가 문기를, 천자가 嘗祭·禘祭·郊祀·社祀 및 五祀의 제사에서 簠簋를 이
미 진설하였을 때 天子가 崩御하거나 왕후의 喪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천

19) 월령에 따르면, 오행의 원리에 맞추어 초봄에는 지라, 초여름에는 허파, 토왕일에는 심장, 초가을에는 간, 초겨울에는 콩팥을 제물로 바친다고 한다(“孟春其祀戶祭先脾 孟夏其祀竈 祭先肺 中央土其祀中霤 祭先心 孟秋其祀門 祭先肝 孟冬其祀行 祭先腎” 『禮記』, 月令) 오행의 원리는 칠사 신들의 축판 내용을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조선시대 칠사의 축판을 보면, “○○ 신께 아뢰입니다. 초○에 이르러 정성스러운 제사를 종묘에서 올리니 신령스러운 신께서 임하소서.(致告于 ○○之神 節屆孟春 宜舉精禋 祗薦闕宮 乃逮明神)” 이다. 나머지 신들의 축판도 계절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별제로 드러진 중류신의 축판 내용은 “중류 신께 아뢰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길러주시니 이러한 귀신의 공덕을 받아 일정한 예의를 따라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밝혀 드립니다.(致告于 中霤之神 保養眚庶 寔荷神功 茲率常禮 用昭予衷)” 이다. (『國朝五禮儀序例』 권1, 吉禮, 祝板.) 참고로 당나라의 축판을 보아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오행의 원리를 근간으로 칠사 신들을 나누어 모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司命三陽煦物序惟始式遵常禮...戶云時惟歲首升陽贊滯 竈云時惟夏始盛陽作統 門云時惟孟秋升陰紀物 厲云時屬實沉氣序方肅 行云時惟冬首盛陰昨紀 『大唐開元禮』 권37, 吉禮, 皇帝時享於太廟)

자가 봉어하여 아직 엄하지 않았으면 오사의 제사는 행하지 않고, 이미 엄한 뒤라면 제사를 지내되 그 제사에 시동을 맞아들여서 祝이 밥을 올리는데 3번 밥을 먹게 하고 더 권하지 않는다...또 빈소를 열어 靈柩를 들어내는 데서부터 장사지내고 돌아와 反哭할 때까지 五祀의 제사를 행하지 않고, 장사를 마친 뒤에 제사를 지낸다.²⁰⁾

立冬에 천자는 내년에 모든 일이 잘되기를 천신과 종묘에 기원한다. 사직과 문에 희생을 바치며, 납일에는 先祖와 五祀에 제사한다.²¹⁾

오사를 천자의 장례를 마친 후 지낸다는 내용과 납일에 先祖와 오사에 제사지낸다는 내용이다. 종묘제향과 오사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경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천자가 계절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기사항과 권장 사항들을 규정하고, 각 계절의 神·희생·방위를 정해서 친히 제사를 드리고, 계절별로 머무는 공간²²⁾도 정해져 있었다는 내용은 인간사를 계절에 맞추어 해결하려는 철사 또는 오사의 우주론적인 순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확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철사만을 놓고 보면, 자연의 시간을 계절의 단위로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계절의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조상들도 불러 모아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자연의 순행을 기원하는 형태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철사와 종묘제향의 계절별 분류를 보면 표<1-4>와 같다.

20) 『禮記』, 曾子問, “曾子問曰 天子嘗禘郊社五祀之祭 簠簋既陳 天子崩 后之喪 如之何 孔子曰廢 曾子問曰 當祭而日食 大廟火 其祭也如之何 孔子曰 接祭而已矣 如牲至未殺則廢 天子崩未殯 五祀之祭不行 既殯而祭 其祭也 尸入三飯 不侑 醕不酢而已矣 自啓至于反哭 五祀之祭不行 已葬而祭.”

21) 『禮記』, 月令, “天子乃祈來年于天宗 大割祠于公社及門閭 臘先祖五祀.”
이외에도 월령에 의하면, 季夏에는 모든 고을에 있는 희생을 하늘, 명산대천, 동서남북의 모든 신, 종묘와 사직에 바쳐 백성을 위해 복을 빈다(“以其皇天上帝 名山大川 四方之神 以祠宗廟社稷之靈 以爲民祈福.”)는 내용, 仲春에는 얼음을 꺼내 종묘에 천신한다(“天子乃獻烝開水”)는 내용, 季秋에는 상제와 종묘에 드리는 제사가 있으며, 희생을 갖추어 천자에게 고한다.(“大饗帝 嘗犧牲 告備于天子.”)는 내용이 있다. 또한 돌아가신 왕들에 대한 제사를 계절별로 사(祠)·악(禴)·상(嘗)·증(烝)이라 명명하는데서도 종묘와 철사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周禮』, 大宗白.)

22) 월령에 의하면, 천자는 입춘에는 궁궐안의 동쪽 집인 靑陽에, 仲春에는 청양 太廟에, 계춘에는 청양의 右수에 기거한다. 맹하에는 明堂의 左수에, 仲夏에는 명당 태묘에, 계하에는 명당 우개로 거처를 옮긴다. 季夏 토왕일에는 태묘 태실로 거처를 옮기고, 맹추에는 명당의 서쪽 건물 왼쪽 방인 總章 左수에, 仲秋에는 총장 태묘에, 계추에는 총장 우개에 기거한다. 맹동에는 玄堂 좌개에, 仲冬에는 현당 태묘에, 계동에는 현당 우개에 기거한다.

<표1-4> 조선시대 계절별 종묘제향과 칠사 신들

宗廟	孟春	孟夏	孟秋	孟冬	臘日
七祀	司命/戶	竈	公厲/國門	國行	司命·戶·竈·中霤·公厲·國門·國行

조선시대 칠사는 기본적으로 四時 孟月 종묘 제향에서는 각 계절에 해당되는 칠사 신이 제향 되었고, 동지 이후 셋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의 종묘 제향에서는 칠사 신들이 한꺼번에 제향 되었다. 중류신만 계하 토왕일에 별제(別祭)의 독립된 형태로 제향되었는데, 이는 사시 종묘제향에 맞춘 결과인 듯하다.²³⁾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경전에 근거한 칠사와는 달리, 조선의 칠사는 계절이 시작하는 달[孟月]에만 제향되었다는 점과, 납일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위와 같이 계절마다 종묘제향에서 왕실의 조상들을 모셔놓고, 동시에 각 계절에 해당되는 신을 불러들여 고(告)하는 칠사제향을 행하였는데, 이것은 해당 계절이 장애 없이 순행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우주론적 순환의 의미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칠사가 종묘제향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작은 의례일지 모르지만, 그 의미의 측면에서는 종묘제향의 우주론적 순환을 보다 강화시키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Ⅲ. 五祀와 七祀

유교적 이념으로 건국된 조선은 국가 의례를 통해 천자/제후라는 제사 주체의 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국가의례가 유교적 예(禮)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지향점을 담지해야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1392년(태조 원년, 8월)에 예조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 등이 건의한 국가 사전(祀典) 개정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보면²⁴⁾,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상정 기준을 알 수

23) 『國朝五禮儀』 권1, 吉禮, 四時及臘享宗廟儀; 祭中霤儀
『世宗實錄五禮儀』 권129, 吉禮儀式, 親禘宗廟儀, 祫享宗廟攝事儀; 권130, 四時及臘親享宗廟儀;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 時日; 『春官通考』 권10, 吉禮, 宗廟; 『大韓禮典』 권3, 吉禮, 時日.

조선시대 칠사를 배향하는 종묘제향 시일, 儀節의 분류는 唐의 『大唐開元禮』(732)를 따르고 있다. 단지 의절의 이름만 다를 뿐이다.

24) 『太宗實錄』 권1, 太宗元年 8月 庚申. “禮曹典書 趙璞 等上書曰 臣等伏觀歷代祀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려시대의 잡사(雜祀)에 해당되었던 불교식 그리고 도교식 의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즉 유교 이외의 신념은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구(圓丘)는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절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며, 전물(奠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국가의 예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제후국으로서의 조선은 명나라를 사대(事大)하였고, 그 힘(power)의 관계를 반영시켜 격에 맞는 국가의례만을 책정해야만 했다. 이후 국가의례의 정비는 태종 10년(1410년) 8월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태종 11년(1411년)부터 태종 15년(1415년)까지 5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단행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선시대에 네 번의 국가祀典 개편의 과정이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국가의례에 관한 논의들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제사해서는 안되는 제사를 행하면 그것을 淫祀라고 한다. 음사를 통해서서 복을 얻을 수 없다.²⁵⁾

친하를 다스리는 친자는 온갖 종류의 신에게 제사드린다. 제후는 자기 땅을 보존하는 동안에는 자기 땅의 온갖 신에게 제사 드린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그 제후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²⁶⁾

각 계층별로 지낼 수 있는 제사의 종류와 대상이 다르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것[淫祀]이었다. 이것은 정사(正祀)/음사(淫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은 계급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하며, 유교이외의 타종교의 신들을 제사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유교적 이념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대명 의리론을 표방하였던 조선은 이러한 이념을 국가 의례에 적

宗廟 籍田 社稷 山川 城隍 文宣王 釋奠祭 古今通行 有國常典 今將月令規式 具錄于後 請下攸司 以時舉行 圓丘 天子祭天之禮 請罷之 諸神廟及諸州郡城隍 國祭所請許 只稱某州某郡城隍之神 設置位板 各其守令 每於春秋行祭 奠物祭器酌獻之禮 一依朝廷禮制 春秋藏經 百高座法席 七所親幸道場 諸道殿 神祠 醮祭等事 前朝君王各以私願 因時而設 後世子孫 因循不革 方今受命更始 豈可蹈襲前弊 以爲常法 請皆革去 朝鮮 檀君 東方始受命之主 箕子 始興教化之君 令 坪壤府 以時致祭 前朝 惠王 顯王 忠敬王 忠烈王 俱有功於民 亦於 麻田郡 太祖 廟附祭 上下教都堂曰 春秋藏經 百高座法席七所道場 考其始設之原以聞.”

25) 『禮記』, 曲禮, “天子祭天地 祭四方 祭山川 祭五祀 歲徧 諸侯方祀 祭山川 祭五祀 歲徧 大夫祭五祀 歲徧 士祭其先…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

26) 『禮記』, 祭法, “有天下者祭百神 諸侯在其地則祭之 亡其地則不祭.”

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사가 제향될 수 있었던 원인을, 칠사의 경전적 근거를 살펴보면서 그 단서를 잡아보도록 하자. 먼저, 조선시대 칠사의 경전적 전거가 되었던 『예기』(제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왕은 백성을 위하여 칠사를 세운다. 사명, 중류, 국문, 국행, 태려, 호, 조이다. 왕은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칠사를 세운다. 제후는 국가를 위하여 오사를 세운다. 사명, 중류, 국문, 국행, 공려이다. 제후는 자신을 위해서도 오사를 세운다. 대부(大夫)는 삼사를 세운다. 족려(族厲), 문, 행이다. 적사(適士)는 이사를 세운다. 문과 행이다. 서사서인(庶士庶人)은 일사를 세운다. 조 또는 호이다.²⁷⁾

경전에 따르면, 제후국으로서의 조선은 칠사가 아닌 오사만을 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호신’과 ‘조신’에 대한 제사를 행한다면 그것은 예에 어긋나는 음사가 된다.²⁸⁾ 여기서 잠시 칠사냐 오사냐의 문제를 또 다른 경전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표2-1>五祀와 七祀의 경전적 근거

	五祀	七祀
『禮記』曲禮	戶·竈·中霤·門·行	
『禮記』月令	戶·竈·中霤·門·行	
『禮記』祭法	司命·中霤·國門·公厲·國行	司命·戶·竈·中霤·國門·泰厲·國行
『白虎通儀』五祀	門·戶·井·竈·中霤	

몇몇 경전에 명시되어 있는 오사/칠사의 내용을 보면, 칠사는 단지 『예기』(제법)에서만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오사의 구체적인 종류도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칠사

27) 『禮記』, 祭法, “王爲羣姓立七祀 曰司命 曰中霤 曰國門 曰國行 曰泰厲 曰戶 曰竈 王自爲立七祀 諸侯 爲國立五祀 曰司命 曰中霤 曰國門 曰國行 曰公厲 諸侯自爲立五祀 大夫立三祀 曰族厲 曰門 曰行 適士立二祀 曰門 曰行 庶士庶人立一祀 或立戶 或立竈.”

28) 관찰자료인 『조선왕조실록』 이외의 칠사 문제에 관해 언급한 학자로는 이익이 있다. 이익(李瀾)은 『예기』, 「제법」을 언급하면서 칠사는 제후가 제사 지낼 바가 아니며, 역대의 변혁이 갈지 않으나 제후가 칠사에 제사 지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며 더 상고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성호사설』, “司命”),

만이 제사의 등급—七祀, 五祀, 三祀, 二祀, 一祀—을 매기고 있다는 점이다.

천자는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며, 사방에 제사지내며, 산천에 제사지내며, 오사에 제사지내되 해마다 고르게 한다. 제후는 사방에 제사하며, 산천에 제사지내며, 오사에 제사 지내되 해마다 고르게 한다. 대부는 오사에 제사 지내되 해마다 고르게 한다.²⁹⁾

(제법) 이외의 경전에서는 천자/제후/대부, 각각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대상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오사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 그렇다면, 칠사가 실제적으로 실천되었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표2-2>五祀와 七祀의 실행 역사³⁰⁾

殷	戶·竈·中霤·門·行(天子=諸侯)
周	司命·戶·竈·中霤·國門·泰厲·國行(天子)/司命·中霤·國門·公厲·國行(諸侯)/族厲·門·行(大夫)/門·行(適士)/戶 또는 竈(庶士庶人)
漢	門·戶·井·竈·中霤
隋	司命·戶·竈·門·行·中霤
唐	司命·戶·竈·中霤·國門·泰厲·國行
宋	司命·戶·竈·中霤·國門·泰厲·國行
元	司命·戶·竈·中霤·國門·泰厲·國行
明	戶·竈·中霤·國門·國行
朝鮮	司命·戶·竈·中霤·國門·公厲·國行

은(殷)나라에서는 천자와 제후 모두 오사를 행하였고, 주(周)나라 때에 처음으로 칠사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다시 한나라 때부터 천자와 제후가 동일하게 오사를 세워 제사지냈는데, 이때의 오사는 은나라의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³¹⁾ 한나라의 오사는 후한 이후 사라졌다가 위(魏)나라에서 오사를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수(隋)나라 때에는 독특하게 육사—사명, 호, 조, 문,

29) 『禮記』, 曲禮, “天子祭天地 祭四方 祭山川 祭五祀 歲徧 諸侯方祀 祭山川 祭五祀 歲徧 大夫祭五祀 歲徧.”

30) 『通典』 권51, 禮11, 沿革11, 吉禮10, 天子七祀; 『明集禮』 권4, 吉禮, 宗廟.

31) 이때의 오사는 주나라의 오사와 달리 門, 戶, 井, 竈, 中霤이다. 겨울 제사인 行대신 井이 포함되어 있다. 井을 오사에 포함시킨 이유를, 우물은 불이 발생하는 곳으로 땅 속에 있다. 겨울에는 오행 중에서 물[水]이 가장 왕성한 때이며, 식물이 없으려 숨는 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白虎通儀』 권4, 五祀)

행, 종류—를 세워 제사지냈다. 이후 당나라때 다시 칠사가 『大唐開元禮』에 상정되었는데, 이것은 주나라 제도인 칠사를 따른 것으로 고대 이상사회를 주나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부터 칠사가 국가 사전체제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송나라 때에 칠사는 길례 소사(小祀)로 책정되었고, 1075년(神宗8, 熙寧8)에 칠사 신들의 판위(版位)가 태묘(太廟)에 설치되었고, 1081년(神宗4, 元豐四年)에 칠사가 예문(禮文)으로 상정되었다. 원나라때에는 칠사 신위를 종묘의 뜰[廟廷]에 모셔두게 되었고, 송나라와 달리 증류신에 대한 제사만 7월에 드렸다. 그러나 이후 명나라때에는 당나라때부터 일관되게 칠사제향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오사를 채택하여 납일에 한꺼번에 제사하였다.³²⁾ 명나라 오사의 구체적인 종류는 호·조·증류·국문·국행으로 『예기』제법의 오사—사명·증류·국문·공려·국행—와는 다르다.³³⁾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각 시대별로 오사, 육사, 칠사가 각각 선택되어 제향됨으로써 소위 칠사 전통이 견고하게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반드시 천자=칠사, 제후=오사라는 확고한 원칙도 칠사가 고대로부터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당·송·원대에 지속적으로 칠사를 제향 하였지만, 국가사전 어디에서도 제후국의 칠사를 규제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다. 당나라때부터 경전에 근거하여 다시 칠사를 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사 등급에 초점을 두지 않음으로써 경전적 권위가 약화됨과 동시에 그 역사적 권위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칠사를 통해 천자의 권력을 보여주고 확인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다. 조선은 『대당개원례』의 칠사 제향을 고수한 셈인데, 이는 또한 고려시대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상정고금례』와 고제의 참용이라는 의례기준에 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칠사도 이미 그 경전적 권위가 약화된 상태에서 고려로부터 전수 받았기 때문에 변화의 요구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천자는 칠사, 제후국은 오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또 다른 근거는 명

32) 『明集禮』 권4, 吉禮, 宗廟, “開元禮祭七祀各因時享祭之於廟廷司命戶以春 竈以夏 門厲以秋 行以冬 中霤以季夏…宋制七祀爲小祀…元豐四年詳定禮文所言近祭 七祀皆非禮制…四時之祭並與宋同唯中霤則附於七月之祭…國朝用周制惟祭五祀於歲終臘享通祭.”

33) 『明集禮』 권4, 吉禮, 宗廟, 五祀, “周禮五祀春祀戶 夏祀竈 秋祀門 冬祀行 六月祀中霤.”

나라는 칠사가 아닌 오사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찾아보려한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명의 오사—호·조·중류·국문·국행—는 『예기』 월령에 근거한 것으로, <표2-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 칠사와 비교해 보면 봄의 ‘사명’과 가을의 ‘태려’가 없는 형태이다.³⁴⁾ 사명신이 봄 제사의 대상이 되고 태려가 가을 제사의 대상이 된다는 경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명나라에서는 이 두 제사가 배제되었을 수도 있다. 즉, 명나라에서는 계절과 연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못했던, 사명과 태려에 대한 제사는 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명나라에게 있어서는 오사나 칠사나 문제가 천자/제후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명나라가 오사를 선택하여 천자=오사라는 불일치를 초래하였다고 해서 천자임을 망각했다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나라의 오사는 종묘의 배향 신들이자 오행의 원리에 맞아 떨어지는 다섯 신들[오사]만 있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여겨진 듯하다. 오행에 근거한 우주론적 순환의 의미가 천자/제후의 등식을 능가했던 것이라 보여진다. 오행에 근거한 우주론적 순환의 의미가 칠사나 오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행의 원리에 순응하는 신들에 대한 제사가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34) 秦惠田은 유독 『예기』, 「제법」만 칠사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칠사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한다. 사명은 天神에 속한 것이고 려는 人鬼에 속한 것으로, 나머지 신들과 社稷은 모두 땅에 속한 것이라 보고 사명과 려를 더하여 칠사라 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것이라 한다. 또한 제후가 호와 조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 대부이하는 중류에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보답의 의미가 없어서일 것이라 한다. 왕이 백성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도 칠사를 세우면 14祀가 되고 제후는 10祀가 되며, 오사 중 려만 제외한 나머지는 궁중에서 제사지낸다면서 「제법」의 칠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五禮通考』 권53, 吉禮, 五祀. “五祀社稷同爲地示之屬司命則天神 太厲則屬人鬼合爲七祀恐非其類二也 諸侯不祭中霤恐非推報之義三也 爲羣姓立七祀又自爲立七祀是天子有十四祀 諸侯有十祀矣 四也五祀祭於宮中而以厲參之五也 祭法之說本不足信.”)

35) 명의 국가 사전에는 제후국의 종묘에 대해서는 어떠한 항목도 할애하고 있지 않다.(明集禮) 권6, 吉禮6, 宗廟, 王國宗廟考缺)는 점에 생각해볼 만하다. 이것은 명나라에 속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한 『洪武禮制』도 마찬가지로, 종묘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명 사대주의를 내세운 조선 스스로 시왕지제로 『홍무예제』를 참고 하였지만, 단지 산천·성황의 신호를 개칭, 여제의 시행, 주현 社稷制 시행, 축판과 축문의 규식에 관한 것 등을 따랐을 뿐이다. 물론 조선에서 홍무예제가 천자/제후의 예가 아니라 천자/주현의 예라고 하여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렇지만 고려 말에 명과 외교관계 수립되면서, 고려는 명의 藩國으로 국가사전에 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선의 국가의례의 상정 기준이 되었던 것은, 『詳定古今禮』, 『洪武禮制』, 고제(古制)였다.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기준이었을 뿐, 실제로 의례 하나하나의 상정배경을 살펴보면, 제각각 다양한 전거³⁶⁾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종묘의 묘제(廟制)를 보면, 경전적 근거를 따르면, 소목제(昭穆制)를 기본으로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묘제에 관한 세부사항 하나하나 서로 다른 역사적, 경전적 근거를 끌어와서 몇 차례의 논의와 변화를 거듭하였다.³⁷⁾ 이러한 다른 예들을 참고한다고 해도, 조선시대 내내 칠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IV. 七祀의 형식과 제후국의 명분

칠사의 경전적 권위가 약화되어 의례 형식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행해졌다고 해서, 칠사를 그저 종묘에 배향되었던 형식적인 의례였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조선시대의 철저하고 엄격한 국가 의례의 논의에서 정말로 칠사만 예외적으로 아무런 검열도 없이 은근 슬쩍 통과된 것일까?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칠사의 제향을 고례(古禮)에서는 중요하게 여겼는데 난리를 겪은 뒤로는 폐지되어 거행하지 않으니, 대단히 부당합니다. 이번에 태묘(太廟)에 친히 제향하실 때에는 먼저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 예관(禮官)에게 빨리 강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³⁸⁾”

임진왜란 당시 칠사의 위판(位版)이 불타 소멸된 이후로 칠사가 거행되지

섬을 받은 예가 있었는데, 칠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명이 봉건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번국의 종묘에 간섭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종묘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 36) 조선전기 국가의례 상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해영, 『조선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2003. pp. 73~96. 을 참조할 것.
- 37) 조선시대 종묘제에 관해서는 지두환, 『세계 문화 유산 종묘이야기』, 집문당, 2005. 이현진, 「조선 후기 종묘정비와 世室論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을 참조할 것.
- 38) 『宣祖實錄』 권166, 宣祖36年 9月 乙丑. “憲府啓曰 七祀之祭 在古禮爲重 經亂之後 廢而不行 極爲無謂 今此親享太廟之時 不可不爲先修舉 請令禮官 斯速講究施行.”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헌부에서 언급하는 내용이다.³⁹⁾ 이와 함께 칠사가 그저 형식적인 관성에 따라 행해진 의례가 아니었음을 변화된 칠사의 분류 상태에서 엿볼 수 있다. 칠사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세종실록 오례의』에서부터 길례 대사였던 종묘제례에서 배향되었지만, 길례 소사로도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후 1896년(고종33) 에 칠사는 여전히 종묘 제향에서 함께 배향되었지만, 이전 시대와는 달리 길례 소사에서 제외되었다.⁴⁰⁾ 단지 칠사 중 중류만이 길례 소사로 분류되었다. 그 다음해에 편찬된 『대한예전』에서는 중류마저 소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종묘 제향에서 칠사 제향의 절차가 남아 있었다. 칠사 제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순종 1년 7월 23일에 반포된 개정 제사 제도 칙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만약 칠사가 관성의 법칙에 따른 의미 없는 실천이었다면, 시대별로 다르게 분류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칠사의 분류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칠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몇 차례의 고찰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국가의례는 역사적·경전적 전거와 함께, 국가의 공인을 받아 실천됨으로써 하나의 전통이 된다. 그 이후부터는 엄격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만약 의례에 어떠한 변화가 요구된다면 그에 따르는 마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형식의 변화에는 내용의 변화, 즉 이념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조선시대 칠사는 의례 형식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고수되었지만, 제후국으

39) 또한 칠사의 축문을 빠트린 책임자들을 엄중히 다스렸다는 기사도 확인된다. 『太宗實錄』 권28, 太宗14年 10月 甲午. “命李守領 朴居善 杖六十 以校書館官 於宗廟 祭闕七祀祝文也.”

40) 『高宗實錄』 권34, 建陽元年, 8月 14日.

41) 의례의 형식주의라는 성격에 대해서는 두 학자의 이론을 주목할 만하다. 벨(Catherine Bell)은 의례의 요소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형식주의(Formalism)를 말한다. 그녀에 의하면, 형식주의는 대비(공식적인 행위/비공식적 행위)와 정도(형식화된 행위의 표현의 다양성)의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형식주의는 그 사회의 기존 질서를 강화시킨다. 또한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여성을 위해 문을 열어 주는 것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내용이 변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Bell, Catherine.,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139-144.) 벨과는 달리 스탈(Frits Staal)은 의례의 형식에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는 1979년에 인도의 Vedic Agnicayana ritual 현지 연구를 바탕으로, 의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규칙들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한다. 의례 행위자가 의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규칙들이 틀리지 않도록 실행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Staal, Frits., *Rules Without Meaning: ritual, mantras, and the human sciences*, New York : P. Lang, 1990.)

로서의 유교적 명분을 일부 수용하고 있었음을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추측해 보고자 한다.

첫째, 칠사 중에서 가을 제사의 대상이 되는 ‘공려(公厲)’라는 이름이다. 천자가 드리는 칠사에서 ‘여’는 ‘태려(泰厲)’라고 하는데, 제사를 받지 못하는 왕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칠사에서 ‘여’는 ‘공려’라고 칭하였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려는 제후의 격에 맞춘 무사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이름이다. 제사는 칠사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여’의 이름은 제후가 드리는 오사의 형태를 갖춘 ‘공려’라고 명명하였다. 제사 대상의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은 제사를 받는 대상뿐 아니라 제사 주체의 지위도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천자/제후는 칠사/오사라는 제사 대상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모셔지는 신위의 호칭도 제사의 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이 경전에 근거하여 제후국으로서 오사를 세우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어떠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의 기록으로는 ‘여’로 기록되어 있다.⁴²⁾ 만약 고려시대에 ‘여’ 또는 ‘태려’로 명명되었다가 조선시대에 ‘공려’로 변화되었다면, 조선초기부터 칠사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칠사와 오사를 비교하였을 때,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공려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려와 태려에 대한 제향의 방법, 시기, 의미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의례의 대상 신위의 이름만 바꾸어 놓는 일종의 타협의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칠사에서 오사로의 의례 형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범주로서의 칠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의례 주체의 변화만 ‘공려’라는 신위를 통해서 살짝 보여주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칠사는 형식도 변화시키지 않고 제후국으로서의 유교적 명분도 지키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타협의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기』제법에 근거한 오사에는 여름에 상응하는 ‘조산(寵神)’에 대한 제사가 없다. 만약 오사에 따라 제사지낸다면, 여름의 시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제사 대상이 없는 셈이다. 칠사의 의미인 우주론적인 순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계절이라도 공백기가 있어

42) 『고려사』 권61, 志15, 禮3, 太廟. “門外位…設七祀位於廟廷之西稍南東向北上 神席皆以莞位版 各設於座首 春祀司命戶 夏祀竈 季夏祀中霤 秋祀門厲 冬祀行 唯臘享遍祭之.”

서는 안 될 것이다. 칠사는 언제나 일년에 다섯 차례, 그 당한 때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행해온 의례이다. 따라서 음식을 주관하며, 여름에 상응하는 조신에 대한 제사가 없는 오사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의례의 형식이었고, 그 의미 또한 완벽하지 못한 상태로 행해지는 불완전한 의례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천자는 칠사, 제후는 오사라는 원칙과 명분보다는 오행의 순환에 비중을 두었던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미 앞에서 칠사의 경전적 권위가 약화되었고 명으로부터의 대외적인 압박도 없었음을 확인한 바이다. 이것 또한 의례의 형식도 변화시키지 않고 제후국으로서의 유교적 명분도 지키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타협의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칠사가 종묘제향에 속한 의례로서 아무런 의미도, 재고찰도 없이 반복되었을 것이라는 성급한 단정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이 글은 조선시대 칠사의 이념과 실천의 차이, 명분과 실재의 차이의 원인을 나름대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칠사가 천자=칠사, 제후=오사라고 설정한 경전과는 어긋난 형태로 지속되었던 원인을, 칠사가 실제로 실행된 시대부터 경전적 근거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역사적 권위와 함께 경전적 권위도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찾아보려 하였다. 그렇다고 조선시대 칠사가 그저 종묘제향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의례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칠사 자체가 가지는 오행의 우주론적 순환의 의미와 제후국에서만 드리는 ‘공려’라는 제사이름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려 하였다. 하지만 이 글은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몇 가지 가능성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이 글은 칠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조선시대 국가 의례에서 드러나는 이념과 실천, 명분과 실재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조선시대 국가의례 연구는 유교적 이념을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전 시대와의 변화된 측면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칠사라는 작은 의례로도 조선시대 국가의례 전반의 성격, 나아가 조선의 종교문화를 들여

다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종교 의례를 들여다보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는 더 폭넓고 세밀한 안목이 요구됨을 절감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Abstract>

A Study on Chilsa in the Chosun Dynasty

Kwon, Yong-lan

This thesis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and meaning of *Chilsa* through form of *Chilsa* in the Chosun dynasty. *Chilsa* is the national ritual name of worship seven gods, that is to say *Sameog*(control man's destiny, spring ritual) · *Ho*(control national gate spring ritual) · *Zo*(control palace kitchen, summer ritual) · *Kumoon*(control national gate, fall ritual) · *Gongyeo*(dead feudal lords without son, fall ritual) · *Gukheng*(control everything on road, winter ritual), *Junglu*(control dwelling of palace, June of the lunar year ritual). *Chilsa* is small ritual which done secondly in *Jong mo*(the ancestral shrine of the royal family)ritual. *Jong mo* ritual is the important ritual which pray well-being of nation from the ancient times, together *Chilsa* is also national ritual has weight.

The Chosun dynasty established by Confucianism ideal tried to realize this through national ritual. Therefore, The Chosun dynasty can practice only ritual which is suitable for status of feudal lords. And so object and proceeding of ritual was reorganized by Confucianism system. But there was no any rigid argument for the early years of the Chosun dynasty. According to principle an emperor/feudal lords, The Chosun dynasty can perform not *Chilsa* but *Osa*(five ritual)—*Sameog*(control man's destiny) · *Kumoon*(control national gate) · *Gongyeo*(dead feudal lords without son) · *Gukheng*(control everything on road) · *Junglu*(control dwelling of palace). As feudal lords nation, Though The Chosun dynasty has no qualification to perform ritual that only emperor can practice, constantly perform *Chilsa*. Moreover, In the late years of the Chosun dynasty, There was no any relook about this.

Chilsa has meaning which smooth Cosmological circulation by performed

with *Jong mo* ritual of five times—each onset of moon and June of the lunar year—per an year. And *Chilsa* was not performed on the ground of the scripture which establish an emperor/feudal lords=*Chilsa/Osa*. Rather, It was performed by place a great deal of weight on meaning and form of *Chilsa* itself.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we can understand difference of ritual base and practice, idea and practice. Moreover, we can understand the Chosun dynasty ritual established not by principle of an emperor/feudal lords, but by various scripture and history. Also, we can understand it was instituted through process of compromise with necessity.

Key words: Chilsa, Cosmological circulation, an emperor/feudal lords, onset of moon and June of the lunar year.